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시청각기록물 등록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남해군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하며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시청각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행전·전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하고

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러나, 경상남도 남해군(○○○○실)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면서,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촬영한 사진 중 등록대상을 선별한 후 사안별(행사별)로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설정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, 이를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남해군수는

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청각 기록물이 소홀한 관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록관리 지도·점검 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,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기록물이 사안별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·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